

주목할 만한 내용

개인소득세 ("PIT")

1. 해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는 외국인은 PIT를 신고해야 함;
2. 개인 그룹에 대한 PIT 확정신고;

법인소득세 ("CIT")

1. 재임대업 (sub-lease)을 추가할 경우 CIT 인센티브;
2. 외국인 주재원에게 발생한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CIT 및 PIT 과세;

외국인 계약자세 ("FCWT")

1. 베트남 시장에서 재화 수출입 및 유통권의 수행에 대한 FCWT;
2.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3. 모회사에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한 FCWT;
4. 현지 수출입 (on-the-spot export and import) 형식으로 한 재화판매소득에 대한 FCWT

무역 및 관세

1. 수출품 가공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VAT 환급;
2. 수출 가공 기업 (EPE)의 지점은 관세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3. EVFTA에 따른 재화의 원산지 증명서

01

개인소득세

02

법인소득세

03

외국인 계약자세

03

무역 및 관세

개인소득세



지침 문서

해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는 외국인은 PIT를 신고해야 함

일본에서 주택을 임대로 인해 1억VND이상의 연간소득을 얻은 개인 외국인의 경우 재무부의 2015년06월15일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 제8조 a & b 점에서 안내된 PIT 신고절차 및 서류규정에 따라 PIT를 신고해야 한다.

베트남 PIT는 임대주택이 위치한 일본 세무당국에 신고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은 해당 해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PIT를 근로소득이 발생한 지방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장소)에 직접 관리하는 현지 세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1/TTS호 양식의 세금 신고서로 - 신고한다. 제01/TTS호 양식의 [32], [33] 기준은 조세 관리법에 따라 면세, 감면 대상인 경우 외국인이 자체 결정하여 [32] 감면세금 계산을 위한 근거소득 및 [33] 감면세금의 기준에 채운다. 조세 관리법에 따라 세금면제,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이기준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의 경우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05월30일 제16468/CT-TTHT호 OL 제3조에 따라 진행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11월 23일 제101326/CTHN-TTHT호 OL: 일본에서의 주택임대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

개인 그룹에 대한 PIT 확정신고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그룹을 대표하는 비사업 개인인 팀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에게 지급할 때마다 10% PIT를 징수한다. 회사가 그룹의 각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05/QTT-TNCN호 양식으로 PIT확정신고할 때 제05-2/BK-QTT-TNCN호 양식으로 팀장에게 지급한 총 소득 및 징수한 PIT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에 개인은 규정에 따라 PIT확정신고해야 할 대상인 경우 과세연도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조세당국에 PIT 확정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11월13일 제99064/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법인소득세



지침 문서

재임대업 (sub-lease)을 추가할 경우 CIT 인센티브;

기업은 자본증가 또는 사업투자 확장 없이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 공장, 또는 창고의 재임대 사업 활동을 추가할 경우 러한 추가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다.

(세무총국의 2020년11월04일 제4703/TCT-CS호 OL)

외국인 주재원에게 발생한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CIT 및 PIT 처리

외국인 주재원에게 (식비, 숙박비 및 생활비등) 호텔격리 비용은 노동계약서상 회사가 주택비용을 부담한 내용이 명시되고 적절하고 충분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CIT 확정시 공제가능비용에 해당한다.

Covid-19 진단검사 비용은 제78/2014/TT-BTC호 시행규칙 제6조 2.30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에 대한 복지비용으로 간주되며 공제가능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외국인 주재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격리비용은 외국인 주재원이 받을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PIT가 부과된다.

(세무총국의 2020년11월26일 제5032/TCT-CS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베트남 시장에서 재화 수출입 및 유통권의 수행에 대한 FCWT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 (외국인 계약자) 과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기업이 상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 유통권을 수행하므로 재화를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베트남기업에 판매하면 해외기업이 베트남에 FCWT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베트남 기업은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제8조, 4항, n점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게 지급할 때 FCWT를 징수하고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 년 12 월 9 일 제28085 / CT-TTHT호 OL)

모회사에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해외에 모회사 (외국인 계약자)로부터 자본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된 대출이자에는 베트남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 회사는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FCWT을 원천징수하고 모회사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모회사가 대출이자를 포기할 경우 베트남 회사가 규정에 따라 해당 대출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 년 12 월 4 일 제 27648 / 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cont.)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해외기업 (외국인 계약자) 은 베트남에서 상품권을 판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된 경우 베트남에서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 기업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할때 FCWT를 징수해서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8월 21일 제 77551/CT-TTHT호 OL)

현지 수출입 (on-the-spot export and import) 형식으로 한 재화판매소득에 대한 FCWT

외국인 계약자는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로 인한 소득을 발생할 경우 해당소득이 FCWT 과세대상이 되며 CIT 1%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에서 상품을 받는 기업은 FCWT를 징수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상품판매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부분은 베트남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된다. 베트남측은 VAT를 공제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Binh Duong 세무당국의 2020년 11월 30일 제 26877/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품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VAT 환급

외국 기업과 체결된 가공생산계약에 따라 수출품 가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부품, 보급품 (제13/2008/QH12호 VAT 법령 제 5.20조에 따라 VAT 과세대상이 아님)을 수입시 VAT를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된 VAT가 과납세금으로 간주되며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으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2020년 11월 24일 제7434/TCHQ-TXNK호 OL)

수출가공기업 (EPE)의 지점은 관세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수출가공 구역, 산업단지, 경제구역에서 설립된 수출가공기업 ("EPE")의 부속지점은 현행규정에 따라 외부와 분리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EPE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들 간에 상품을 거래할 때 관세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0년 11월 26일 제3450/HQHCM-GSQL호 OL)

EVFTA에 따른 재화의 원산지 증명서

EVFTA의 발효일 2020년 8월1일부터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된 EU원산지 재화의 경우 제11/2020/T-BCT호 및 제38/2018/TT-BTC 호 시행규칙의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인보이스, 배달 인수증 또는 재화 정보를 반영하는 기타 상업용 증서 (즉, 선적 통지서를 (delivery note), 건적송장 (a proforma invoice),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등) 통하여 원산지를 자체 인증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비고: 선하증권 (bills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airway bill) 등과 같은 운송서류는 기타 상업용 증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베트남으로 수입된 EU 원산지 재화의 경우 원산지 자체 인증에 대한 신고서상 서명:

- 6000 EUR 또는 그 이상인 가치의 재화: REX number가 있는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수출자의 서명이 없어도 관세당국에 의해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 6000 EUR 미만인 가치의 재화: 원산지 증명서상 수출자의 수기서명이 있어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국 신고:

- 원산지 증명서상 EU 원산지로 신고되며 및 특정 한 EU 국가의 이름을 추가로 신고될 경우 원산지 증명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 원산지 증명서상 특정 한 EU 국가의 이름만 신고될 경우 베트남 지방 관세국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고 EU 유권기관에 통보하기위해 관세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의 2020년 12월 08일 제7735/TCHQ-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1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